

# 200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

의안 번호	제113호
의결 년월일	2007. 5. 31 (제136회)

제의년월일 : 2007. 4. 30.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회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  
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  
위원을 선임하기 위함.

## 2. 내 용

- 200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부천시의회	시 의 원	김 승 동	○부천시의회 의원 ○기획재정위원회 위원
위 원	지군섭 세무 회계사사무소	세 무 사	지 군 섭	○국세청, 세무서 20년 근속 ○제39회 세무사 시험 합격 ○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
"	지선봉 세무 사사무소	세 무 사	지 선 봉	○국세청, 세무서 20년 근속 ○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○한국방송통신대 졸업
"	안길준 세무 회계사사무소	회 계 사	안 길 준	○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역임 ○동국대학교 졸업
"	시장추천자		성 광 식	○전 공무원(회계과장, 의회사무국장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관 련 법 규

##### ○ 지방자치법

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개정 '99. 8. 31.>

(이하생략)

##### 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6조 (결산승인)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<본조신설 99. 12. 31>

제46조의2 (감사위원의 선임) ①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,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'94. 7. 6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.<개정 '94. 7. 6, 99. 12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##### ○ 부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제2조 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.

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(이하생략)

제6조 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,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

(이하생략)